

제33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춘대 의원 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임 춘 대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송파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임춘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117조는 제22조의4제1항제5호는 서울특별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때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 동의 절차는 본예산 편성에 앞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단계에서 제출된 예산 관련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중복 검토되어 행정력의 낭비와 절차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안 제출 시점과 예산안 심의 시점의 차이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출연 규모가 변동될 경우, 사전 동의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출연 등의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타당성 등 정책적 판단에 집중하고,
예산의 구체적인 규모와 산출내역의 적정성은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하여
의회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